

改正된 法人稅法 과 實務對策

—會計實踐上 問題點을 中心으로—



韓一세멘트工業株式會社

顧問 李文幸

目 次

1. 序 言
2. 設備資產과 耐用年數 短縮
3. 退職給與 充當金の 損金算入
4. 貸損充當金の 損金算入
5. 損益金の 새 規制와 實務對策
6. 所得과 課稅標準의 區分
7. 結 言

<1. 序 言>

改正된 法人稅法을 中心으로 우리 業界가 必要로 하는 會計實踐上의 對策을 몇가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年末 年始에 걸쳐 增稅一邊倒의 稅制改革은 많은 物議와 關心裡에 지난 2月 27日에 施行規則을 모두 確定 公布하므로써 매듭을 짓고 말았다. 그동안 確定된 法令을 通하여 많은 研究와 今後의 會計實務에 對한 方案이 세워지고 있으리라 믿어지므로 세삼 이렇다 할 指摘事項이 있는 바도 아니나 그런데로 重要하다고 느껴지는 몇가지 事項을 提示하므로써 實務對策의 參考에 資할가 한다.

<2. 設備資產의 耐用年數 短縮>

이번 稅法 改正에 있어서 우리 業界로서 若干

의 惠澤을 본것은 機械設備에 對한 耐用年度의 短縮이라 하겠다.

이러한 措置는 企業의 內部留保를 充實化시키는 한편 設備의 更新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減價 消却資產의 耐用年度를 10~30% 程度 短縮하는 政策에 따른 것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40%가 短縮되므로써 不合理한 點이 한결 是正되었다고 하겠다.

改正된 바에 의하면 從前까지 燃窯部分 10年, 其他 20年이든 것을 「세멘트」製造設備라고 一括 表示하여 耐用年度를 12年으로 하였다.

따라서 1968年 1月以後 終了하는 事業年度부터는 다음과 같이 減價消却率을 適用하여 計算하면 된다.

從 前

改 正

燃窯部分(10年) 20.6% }
其 他(20年) 10.9% } (12年) 17.5%

또한 資產再評價를 한다면 耐用年度가 다시 調整되는 바 新規 取得으로부터 5年이 經過한 때 資產再評價를 하였다면 再評價를 한 年度부터는 다음과 같이 그 耐用年度가 法定年度에서 短縮하게 되고 따라서 適用되는 消却率도 달라지는 것이다. (令 52 參照)

12年(法定年數) - 5年(經過年數)
= 7年(殘存年數)

5年(經過年度) × 40% = 2年

7年 + 2年 = 9年... 再評價後의 耐用年數

9年의 消却率 = 22.6%

固定資產의 減價消却과 關聯하여 舊法과 달라

진 것은 從前까지 取得金額이나 修繕費가 1,000 원 未滿의 것은 直時 損金으로 容認하는 것을 10,000원으로 引上한 것과(令 49 但) 收益的 支出과 資本的 支出의 例示 規定이라 하겠다.(規31)

會計實務上에 있어서 修繕費와 資本的 支出의 限界 識別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稅法은 構念的인 基準을 두고 있으나(令 50) 具體的인 例示가 없다는 點을 고려하여 施行規則 第31條에 修繕費와 資本的 支出의 例示를 하고 있으므로 實務上 이를 基準하여 平素의 處理에 臨하도록 함이 좋겠다.

〈3. 退職給與充當金の 損金算入〉

從業員이 退職을 할때 支給하는 退職給與金을 從業員이 退職을 할때 一時的인 費用으로 하지 않고 當該 從業員의 在職期間中 各期間에 割當하여 費用化하기 위해서 設定되는 負債性充當金이 退職給與充當金인바 改正法에서는 다음과 같은 限度額과 條件으로 이의 計上을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法13, 令 15, 規 6)

첫째 退職給與充當金の 限度額は 1年間 繼續하여 勤勞한 使用人에 支給한 總給與額의 10%의 1 以內의 金額인데 總給與額에는 賞與金은 除外하므로 다음과 같이 計算하고 會計處理를 하면 된다.

$$\text{退職給與充當金} = (\text{年間支給總給與額} - \text{年間賞與金支給總額}) \times \frac{1}{10}$$

둘째 各事業年度마다 退職給與充當金에 計上한 金額은 金融機關, 遞信官署등에 預置期間 1年以上으로 定期預金이나 定期積金을 하여야 하는데 그 預入은 退職給與充當金을 計上한 決算日로부터 60日以內에 하여야 하므로 法人稅申告日까지만 預入하면 된다.

셋째 各事業年度の 決算上 退職給與充當金을 計上하고 稅務計算上的 損金算入을 받고자 할 때에는 法人稅申告書에 退職給與充當金計定の 明細書와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 預入한 證明書を 添付하여야 하고 다음 年度부터는 이와 함께 前年度分の 預入履行證明書도 添付하여야 한다.

넷째 退職給與充當金을 計上하고 그 後에 使用人이 退職을 하여 退職金을 支給한 경우에는 이미 計上되어 있는 退職給與充當金과 먼저 相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制度가 처음 實施되는 1968年 1月 1日 以後 처음 開始되는 年度는 그러하지 않으나 그 다음의 年度부터는 實際 退職金의 支給이 될 때에는 이미 計上되어 있는 退職給與充當金에서 먼저 相計 處理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다섯째 萬若에 退職給與充當金으로 預入한 長期性貯蓄을 그 預置期間(1年以上)이 끝나기 前에 引出을 한 때에는 退職給與充當金을 計上한 年度の 益金에 算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損金으로 算入하였던 것을 還元하여 益金에 加算하게 되므로 加算稅率등의 適用도 따르게 마련이다.

위와 같은 退職給與充當金の 損金算入의 要旨을 알아두고 實務上으로는 月別의 原價를 適正히 算定하기 위하여 每月分の 給與額의 10%를 計上하여야 하겠으며 期末에 이르러 期間中 退職給與充當金計定에 累積된 金額이 年間으로 換算하여 過不足이 생긴다면 이를 調整하여 計算하면 된다.

이러한 새로운 制度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調整에 있어서 뒤에 言及하는 貸損充當金과 함께 晩時之嘆이나마 多幸한 일로서 一見컨데는 長期性貯蓄을 條件附로 損金에 算入하기 때문에 運營資金이 不足한 경우 借入을 하여 定期預金을 한다면 企業으로서는 別다른 利得이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 될지 모르나 1年間을 預置하는 定期預金을 하여도 다음과 같은 惠澤이 있다고 하겠다.

〈例〉

₩10,000,000을 借入하여 定期預金을 하고 退職給與充當金을 計上한 경우

- A. 法人稅額
10,000,000 × 49.5% = 4,950,000
 - B. 定期預金利子(1年)
10,000,000 × 26.4% = 2,640,000
 - C. 借入金利子(私債)
(10,000,000 × 4%) × 12月 = 4,800,000
- (A+B) - C = 2,790,000... 利得豫想額

勿論 例示한 경우 借入金의 利子에 대한 丙配稅(16.5%)는 債權者를 대신하여 納付(源泉徵收)하여야 하겠으므로 利得額은 적어지는 것이 되겠으나 어쨌든 그대로 多少의 得이 되는 것이며 預金의 利子收入은 稅法上 非課稅所得이므로 이點도 考慮할바라 하겠다.

<4. 貸損充當金の 損金算入>

外上賣出金, 받을어음, 貸與金등의 殘額中 將次 貸損이 될 豫想額은 決算期末에 當該年度의 費用에 計上하는 한편 貸損은 아직 實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外上賣出金에서 直接 控除한다는 것이 不合理하기 때문에 外上賣出金의 殘額은 그대로 存置한채 貸損充當金計定을 設定하는 評價性充當金이 貸損充當金이다.

이 貸損充當金에 대하여도 稅務計算은 증거까지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 하였으나 改正法은 外上賣出金, 받을어음(先手票包含), 貸與金, 營業去來에서 發生하는 未收金等 營業債權의 貸損豫想額을 貸損充當金에 計上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는바 計上을 하는 限度額은 營業債權의 決算期末 現在 殘額의 1%에 相當하는 金額으로 되어 있다. (法 14, 令16)

따라서 決算期末에 있어서 貸損이 實際 發生하지 아니하여도 위와 같은 要旨에 따른 貸損充當金の 計上이 可能하며 貸損充當金を 計上한 翌年度부터는 實際 貸損金이 發生하였을 경우 그 貸損金은 이미 計上되어 있는 貸損充當金과 먼저 相計하여야 한다. (規 8①)

그리고 이 貸損充當金은 實際 發生하였다는 事實制度의 基準이 問題가 되겠는 바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두고 確定的인 貸損損失로 보는 것이다. (令18, 規 8②)

1. 債務者가 破産, 強制執行, 刑의 執行등으로 事業을 閉鎖함으로 인하여 回收할수 없는 債權
2. 債務者의 死亡, 失蹤, 行方不明등으로 인하여 回收할수 없는 債權
3. 外上賣出金이나 未收金은 商法上的 消滅時効가 完成된 것. (商 64, 5年)
4. 어음은 어음法の 消滅時効가 完成된 것. (어

음法 70, 3年)

5. 先手票는 手票法の 消滅時効가 完成된 것. (手法 51, 6個月)

6. 貸與金, 先給金은 民法上的 消滅時効가 完成된 것. (10年)

<5. 損益金の 新規制와 實務對策>

가. 試驗研究費의 損金算入

創業費, 建設利子, 株式發行費, 社債發行費, 株式額面未達額등의 移延費用은 從前까지도 損金算入을 容認하고 있었다. 즉 舊規則 6의2에 의하면 「法人이 損金으로 計上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본다」라고 規定하고 있었으나 改正法은 이를 本法에 「다음의 移延資産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損金으로 計上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損金으로 할수 있다」라고 表現하고(法 17⑩) 새로이 試驗研究費와 開業費를 追加하였다.

따라서 이미 移延資産에 計上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들 移延資産은 損金에 算入하는 것을 容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稅法の 明文을 文理的 解釋으로 한다면 移延資産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들 費用은 會計處理上 일단 移延計定에 計上하고 다음에 다시 損費로 處理하는 것이 稅務計算上 마찰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 指定寄附金の 追加

指定寄附金에 獎學金과 學術研究를 爲한 寄附金과 防衛誠金を 追加하였다. (法 18①)

따라서 從前에는 自然科學系統의 學科를 위한 教育, 施設, 研究를 目的으로 하는 寄附金에 限하여 指定寄附金으로 取扱하던 것을 人文系統의 學科를 爲한 教育, 施設, 研究를 目的으로 支出한 寄附金도 指定寄附金으로 取扱하도록 그 範圍를 擴大하였다. (令 35①②)

具體적으로 말하자면 國公立學校와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의 教育上 必要한 施設을 爲하여 支出한 寄附金은 自然科學系統이건 人文系統이건 또한 國民學校, 中高校, 大學校를 가리지 않고 모두 指定寄附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主務部長官이 추천하는 個人團體에 教育費 또는 研究費로 支出한 寄附金이나 獎學金도 指定寄附金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團體라 함은 學校와, 政府로 부터 許可나 認可를 받은 學術研究團體, 獎學團體 및 技術振興을 爲한 團體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民法 第33條의 規定에 따라 設立한 財團法人이나 社團法人은 勿論 其他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나 認可를 받아 設立한 위와 같은 各團體인 것이다.

다. 機密費의 支給基準

非指定寄附金, 接待費, 交際費, 機密費등의 支給은 稅務計算上의 容認限度額이 從前과 같다. 그런데 會計實務上으로 이들에 對한 證憑書類를 完全히 具備할수 없음도 事實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稅法上 支給報告對象에서도 除外하고 있다.

이와 같은 費用 가운데 특히 稅務調査上 마찰이 甚한 것은 機密費라 생각된다. 비록 그 支給總額이 是否認計算上 限度額 以內라 할지라도 個個의 支出을 들추어 낼때 企業의 實情은 甁어리 甁가습 甁듯 그 內容을 밝힐수 없는 것이 일수일 것이다.

稅務計算이 限度額 以內에서는 可及的 그 內容을 不問에 부치는 傾向이기는 하나 不當한 經費를 이것에 便乘할가바 取하는 경우도 있고 또 甲勤所得의 計算上 業務와 關聯이 없는 機密費는 甲勤稅를 課稅하여야 하므로 取하여지는 것인데 當하는 側은 여간 苦痛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改正法에서는 機密費는 定款이나 社規, 아니면 株主總會나 理事會의 決議로서 그 支給基準을 定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支給한 金額으로 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規 17) 따라서 앞으로 機密費의 支給은 企業의 實情을 勘案한 支給基準을 理事會의 決議로서 制定하고 이에 따라 取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라. 株主아닌 任員의 賞與

出資者인 任員의 賞與는 利益處分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趣旨에서 損金算入을 할수 없으나 非出資者인 任員은 從業員과 마찬가지로 賞與金을

損金에 算入할수 있었으나 改正法은 非出資者인 任員의 賞與도 損金에 算入할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法 16條 13號)

곧 母法은 株主 또는 株主아닌 任員에게 支給한 賞與金이나 任員의 退職金은 施行令의 定하는 金額을 超過할때 이는 益金으로 본다 라고 明示하고 施行令에 가서는 任員의 退職金에 對해서만 言及하고 있다. (令 28②) 따라서 任員의 賞與金은 그 任員이 株主이건 非株主이건 間에 모두 損金에 算入할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矛盾은 追後 改正에 있어서 是正되리라 믿어지나 現行上 이러한 取扱을 받아야 함을 알아 두기 바란다.

마. 收益實現과 販賣基準

從前까지도 그러하였거니와 稅法은 製品販賣의 賣買損益의 歸屬年度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法 17②)

즉 製品을 引渡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그러나 引渡는 아니하였으나 引渡할수 있는 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引渡할수 있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한다 라는 但書를 두고 있으며 引渡할수 있는 狀態란 製品의 代金(契約金을 包含)의 一部를 받고 當該 物品을 保管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規 13)

따라서 期末 決算에 즈음하여 先受金, 假受金 등 製品의 代金 一部가 受入되고 在庫製品이 있을 때에는 이 先受金등은 賣出로 計上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業界는 이러한 事例가 去來의 形便上 必然的으로 있을수 있으니 決算에 있어서 이러한 處理는 잊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하겠으며 會計實務上 收益으로 計上한다면 未出庫品을 두고 이에 該當하는 賣出原價도 相對的으로 計上하여야 함은 費用, 收益의 對應原則上 當然한 일이다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處理하는 경우 在庫製品中 一部를 出庫로 假定하게 되므로 製品受拂上에 있어서 實際와 符合하지 않는 矛盾이 생기게 되니 이 點은 따로 合理化하는 方案을 適宜 講究할수 밖에 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期末에 있어서 精算되지 아니한 先受나 假受가 만드시 製品代의 一部만도 아니고 資金

의 1時 假受도 있겠으며 또 그렇게도 될 것이므로 이 點은 實務上 再考하기 바란다.

<6. 所得과 課稅標準의 區分>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各事業年度의 所得이며 (舊法 3) 所得은 各事業年度의 總益金에서 總損金을 公제한 金額이라고 表現하여 왔던 舊法(舊 9)에 대하여 改正法은 課稅標準의 計算方法을 따로 明示하므로써 所得과 課稅標準을 明確히 區分하여 이에 따라 國家가 政策上 根本的으로 拋棄한 非課稅所得등이 法人稅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되도록 하였다. (法 8)

곧 法人稅의 課稅標準은 各事業年度의 所得에서 非課稅所得, 移越缺損金, 移越益金, 免除所得 (令 11) 등을 公제한 金額이라고 明示하였다.

따라서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은 發生하였으나, 非課稅所得이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 보다 많은 경우는 그 초과되는 金額만큼은 稅務計算上의 缺損金으로서 次期에 移越되는 것이다.

중전까지는 各事業年度의 所得이 發生하지 아니한 때에는 非課稅所得등은 消滅되고 따라서 國家가 政策上 意圖한 趣旨을 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改正法에 의한 課稅標準의 算式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當該事業年度의 益金總額} - \text{損金總額} \\ & = \text{所得金額} \\ & \text{所得金額} - (\text{非課稅所得} + \text{移越損金} \\ & + \text{免除所得}) = \text{得當該事業年度의 課稅標準} \end{aligned}$$

<例>

1. 第1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은 100이며 그 年

度의 益金總額中 非課稅所得이 150 있다. 이 경우의 課稅標準은 △50이며 稅務計算上의 缺損金으로서 次期로 移越된다.

2. 第2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은 500이며 그 年度의 益金中에는 非課稅所得 1,000, 免除所得 50 이 있다. 따라서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고

| | |
|------------|-------|
| 當該年度의 所得金額 | 500 |
| 前年度의 移越缺損金 | 50 |
| 非課稅所得 | 1,000 |
| 免除所得 | 50 |
| <hr/> | |
| 課稅標準 | △ 600 |

위 △1,500은 缺損金으로서 다시 次期로 移越된다.

이와 같이 國家가 포기한 非課稅所得등을 所得에서 公제하므로써 立法上 政策의 의도하는 바를 살리고 있으나 移越缺損金의 控除가 2年間이라는 點에 비추어 窮極的으로 清算時에는 課稅한다는 矛盾을 아직도 남기고 있다.

<7. 結 言>

紙面의 事情으로 以上 몇가지를 다루는데 지나지 못하나 앞으로의 會計實務은 逐日 複雜化한 稅法의 規定이나 取扱 要領을 理解하므로써 合理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가기를 希求하는 바이다.

중전까지 없었던 所得稅法上의 綜合所得稅와 이에 따라 派生된 法人의 留保所得에 대한 紙上 配當등 많은 問題點이 우리 日常 實務 周邊에 놓여 있는지라 더욱 細心한 注意와 研究가 必要하다고 再次 強調하면서 많은 質問이나 共同研究을 같이 해줄 것을 또한 바라는 바이다.